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보건복지위원회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정보통신망에서의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센터 설치·운영〉

■ 서미화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3559호)

2024. 11.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연 광 석

목 차

I . 개요	1
II . 검토의견	3
1. 정보통신망에서의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센터 설치·운영	3

I. 개요

1. 서미화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3559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서미화의원 등 23인
- (2) 제 안 일 : 2024. 9. 3.
- (3) 회 부 일 : 2024. 9. 4.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우울증갤러리 사건이 발생하는 등 온라인을 통해 유통되는 자살유발정보가 자살이나 성범죄 사건 등으로 이어지며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정보통신망을 통한 자살유발정보는 매년 급증하고 있으나, 현재 이를 모니터링하는 업무는 자원봉사자에게 의존하고 있으며,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내 모니터링 전담인력도 1명뿐으로, 매년 급증하는 자살유발정보에 신속히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임.

자살유발정보는 짧은 시간에 광범위하게 확산될 우려가 있으므로 자살유발정보 유통에 따른 자살 위험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서 유통 행위를 상시 점검하고 해당 행위 발견 시 그에 따른 조치를 즉시 실시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자살유발정

보를 수시로 점검하기 위하여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그 센터의 장으로 하여금 자살유발정보가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 차단 등의 협조를 요청하도록 하는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자살유발정보가 유통되는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등).

Ⅱ. 검토의견

1. 정보통신망에서의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센터 설치·운영

-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센터를 설치·운영하게 하고, 해당 센터의 장이 자살유발정보가 발견될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그 정보를 삭제 또는 차단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9조(자살유발정보예방체계의 구축)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자살유발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u><신설></u>	제19조(자살유발정보예방체계의 구축) 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자살유발정보를 유통하는 행위를 상시 점검하기 위하여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센터(이하 이 조에서 “모니터링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 모니터링센터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자살유발정보가 유통되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u><신설></u>	

<신 설>

<신 설>

② (생 략)

③ 제2항에 따른 자살유발정보예 방협의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 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3(긴급구조대상자 구조를 위한 정보제공요청 등) ① 경찰관 서·해양경찰관서 및 소방관서의 장(이하 이 조에서 “긴급구조기관”이라 한다)은 자살위험자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라 한다)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 차단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모니터링센터로부터 요청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④ 모니터링센터의 장은 유통된 자살유발정보에 대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찰관서·해양경찰관서 및 소방관서의 장에게 수사, 구조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모니터링센터를 제12조의4에 따른 재단에 둔다.

⑥ (현행 제2항과 같음)

⑦ 제2항에 따른 모니터링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제6항-----
-----.

제19조의3(긴급구조대상자 구조를 위한 정보제공요청 등) ①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긴급구조대상자”라 한다)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한 경우로서 다른 방법으로는 긴급구조대상자의 위치 등을 파악하여 구조할 수 없는 경우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이하 “자료제공요청”이라 한다)할 수 있다. 1. ~ 3. (생략) ② ~ ⑨ (생략)	----- ----- ----- -----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 ----- ----- -----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⑨ (현행과 같음)
---	---

□ 현행법은 자살유발정보에 대하여 ‘자살을 적극적으로 부추기거나 자살행위를 돕는 데 활용되는 정보’로 정의¹⁾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한 자살유발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²⁾하고 있음.

1)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2조의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자살유발정보”란 자살을 적극적으로 부추기거나 자살행위를 돕는 데 활용되는 다음 각 목의 정보를 말한다.

가. 자살동반자 모집정보

나. 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정보

다. 자살을 실행하거나 유도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

라. 자살위해물건의 판매 또는 활용에 관한 정보

마. 그 밖에 위 각 목에 준하는 정보로서 명백히 자살 유발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

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9조(자살유발정보예방체계의 구축)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자살유발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벌칙)

③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살유발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그러나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는 자살유발정보를 신속하게 발견하여 후속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이 현행법에는 없는바, 개정안은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서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³⁾에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센터를 두어 자살유발정보가 불특정 다수에게 오랜 시간 노출되어 자살을 유발시키지 않도록 하려는 체계를 갖추려는 것으로 보임.

□ 현재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자살유발정보로서 접수되는 신고 건수는 2019년 연간 32,588건에서 2023년 303,636건으로 매년 기하급수적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이미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여 단순히 웹사이트뿐 아니라 사회관계망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SNS) 등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그에 따라 사람들이 집단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가능한 만큼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는 계

3)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2조의4(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의 설립 및 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살예방 정책수립을 위한 자료 개발 및 정책 분석
2.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지원
3. 제11조에 따른 자살실태조사 지원
4. 제11조의2에 따른 심리부검 지원
5.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6. 자살자의 유족 지원 및 관리
7.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8. 자살예방 연구·개발
9. 자살예방 전문 인력 양성
10. 제13조에 따른 자살예방센터 업무 지원
11.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③ 재단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재단에는 재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이사장을 두며, 이사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재단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⑥ 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⑦ 재단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⑧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속될 것으로 예상됨.

< 연간 자살유발정보 신고 및 자살로 인한 사망 현황 >

(단위 : 건)

연도	자살유발정보 신고	자살로 인한 사망
2019	32,588	13,799
2020	90,772	13,195
2021	142,725	13,352
2022	234,064	12,906
2023	303,636	13,978

* 출처: 보건복지부

□ 현재는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서 운영하는 모니터링 자원봉사자⁴⁾가 자살유발정보가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⁵⁾에게 해당 게시물을 신고·삭제 요청하고, 자살동반자 모집 등 긴급구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소방기관에 신고하는 등의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개정안에 따르면 이 체계가 법률에 근거를 두게 되는 것이고, 자살유발정보에 대한 삭제·차단 요청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에 협조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자살유발정보의 유통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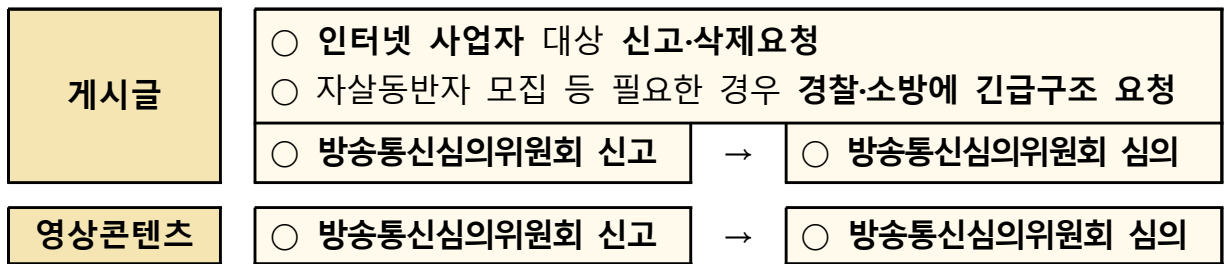
4)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어야 함.

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 체제를 말한다.
2. “정보통신서비스”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기통신역무와 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것을 말한다.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를 말한다.

<현행 자살유발정보 관리 체계도>



* 출처: 보건복지부

□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첫째,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는 불법정보의 유통금지를 다루고 있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의 체계에 따르면, 현행법에서의 자살유발정보와 같은 불법정보에 대한 정보의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는 권한은 방송통신위원회에 있고, 그 전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시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등의 중간 절차와 요건을 규정하고 있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9.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정보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해당 정보의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제1항제9호의 정보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의 장의 요청을 포함한다]이 있었을 것

2. 제1호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호에 따른 시정 요구를 하였을 것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 게시판 관리·운영자가 시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것

이와 같은 일반적인 체계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은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센터의 장이 자살유발정보의 삭제 및 차단 등의 협조를 직접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사실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에 협조하도록 절차를 구성하고 있는바, 자살유발정보의 삭제에 있어서만큼은 다른 불법정보와 달리 이러한 별도의 특례를 두는 것이 표현의 자유와 조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임.

- 둘째, 개정안에는 모니터링센터의 장에게 자살유발정보의 삭제 및 차단 협조 요청에 대한 권한만 부여하고 있고 해당 자살유발정보를 유통시킨 자를 위한 권리를 두고 있지 않은데⁶⁾, 이와 같은 개정안의 태도가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보아야 할지, 표현의 자유와의 조화를 위하여 원칙적으로는 이의 신청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타당할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함.

- 셋째, 개정안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자살유발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는 업무는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 둔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센터가 수행하게 되지만 동 센터의 설치·운영 주체는 보건복지

6) 예컨대 개정안은 어느 자살유발정보를 유통시킨 자에게 자신이 게재한 정보가 자살유발정보가 아니라고 항변할 수 있는 장치를 두고 있지 않으며, 참고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례에서는 원칙적으로는 미리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도록 하고 있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명령의 대상이 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게시판 관리·운영자 또는 해당 이용자에게 미리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의견청취가 뚜렷이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의견제출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부장관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재단과 센터의 관계가 불명확함.
즉 센터가 재단과 다른 별도의 조직으로서 단지 장소적 공동이용관계인지 아니면 재단 소속의 한 부서가 되는지 법률상 명확하지 않음.

따라서 해당 업무를 국가사무로 명확히 하면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이 업무를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 위탁하는 형태로 조문 구성을 정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보건복지부는 자살유발정보의 신고 건수가 매년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어서 그 유통방지에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 및 명령 절차는 통상 한 달이나 소요되어 자살 예방을 위한 실효성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측면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입법취지가 타당하다는 입장임.

< 개정안에 대한 관계 부처 및 기관 의견 >

부처명	개정안에 대한 의견
방송통신위원회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통신망에서의 불법정보에 대한 심의 및 시정요구 등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자살유발정보에 있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이 역할을 담당하게 만드는 것으로서 다른 불법정보 처리 체계와 충돌하는 측면이 있음.
경기도	○ 자살유발정보의 유통을 막기 위한 전문센터를 신설하는 방안이 갖는 장점도 있겠으나, 자살예방사업의 예산과 인력이 부족한 현실을 고려하여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중심으로 전담 부서를 체계화하는 등 자체역량을 강화하는 편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됨.

문 의 처
02)6788-5498